





보건복지부	보	도 참	ュ	자 료
배 포 일		2020. 12. 4	. / (총 23	매)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박 은 정		044-202-1711
전략기획팀	담 당 자	한 연 수		044-202-1714
국무조정실	과 장	김 성 훈		044-200-2293
보건정책과	담 당 자	박 현 수		044-200-2295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과	과 장 담 당 자	설 은 효 유		02-2113-7660 02-2133-7669
경기도	과 장	윤 덕 희	·	031-8008-5420
감염병관리과	담 당 자	최 문 갑	전 화	031-8008-5422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송 준 헌	[건 목r	044-202-1750
방역총괄팀	담 당 자	김 세 은		044-202-1754
산업통상자원부	과 장	나 성 화		044-203-4220
산업일자리혁신과	담 당 자	박 혜 수		044-203-4222
고용노동부	과 장	손 필 훈		044-202-7740
산업보건과	담 당 자	김 원		044-202-7743
중소벤처기업부	과 장	김 봉 덕		042-481-4341
기획재정담당관실	담 당 자	이 정 훈		042-481-441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민간부문 일터 방역관리 강화방안 등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 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민간부문 일터 방역관리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요양병원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종종 **동일 집단격리**(일명 '코호트 격리)를 시행한다고 **언급**하였다.
 - 하지만 동일집단 격리시설에서는 △중환자 발생 시 다른 병원으로의 이송이 어렵고 △의료진과 돌봄인력의 교대가 불가능하며 △교차 감염 우려도 있어 방역 현장에서 애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 이에 따라, 방대본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면서도 방역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세부지침을 조속히 마련하여 지자체와 공유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 □ 정 본부장은 12월 1일부터 수도권 이외의 지역도 거리 두기를 1.5 단계로 격상했으나, 아직 확진자 수가 확실히 줄어들지 않고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 **각 지자체별**로 해당 지역의 **집단감염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핀셋방역**'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 □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며칠 전 대한결핵협회로부터 크리스마스 씰을 전달받았다고 하면서, 결핵은 코로나와 같은 호흡기 전염병이며 아직도 한 해에만 1,600여 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가는 심각한 질병이라고 언급하였다.
 - 크리스마스 씰은 연말이면 국민들에게 가장 친숙한 결핵퇴치 모금방법이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크리스마스 씰 모금도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하였다.
 - 따라서 각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부터 크리스마스 씰 모금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1 이동량 분석 결과

-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 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 시행 첫날인 12월 1일(화) 이동량은 **수도권** 16,019천 건, 비수도권 12,890천 건, 전국은 28,908천 건이다.
 - 직전 주 화요일(11월 24일)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6.1**%(1,042천 건), 전국은 8.4%(2,647천 건) 감소하였다.
 - 한편, 수도권 거리 두기 1.5단계를 발표했던 2주 전 화요일(11월 17일)과 비교하면 **수도권 이동량이 13.2%**(2,435천 건) **감소**하였다.
 - * 수도권: (11.17.) 18,454천 건 → (11.24.) 17,061천 건 → (12.1.) 16,019천 건 전 국: (11.17.) 33,398천 건 → (11.24.) 31,555천 건 → (12.1.) 28,908천 건

< 일일 휴대폰 이동량 >













2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수 권역의 확진자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연말·연시 모임이나 행사 등 집단활동 위험요인이 더해지는 경우 감염 확산세 통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 또한, 자칫 방역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연말·연시 모임의 특성과 환기가 어려운 계절 요인 등으로 동절기 감염확산은 대규모 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 따라서, 이번 연말·연시는 감염 확산세를 반전시키기 위하여 국민께 집에서 안전하게 보내실 것을 권고한다.
 - 이를 위해 크리스마스와 신정 연휴를 포함하여 12월 7일(월)부터 내년 1월 3일(일)까지를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 국민들과 소통하는 생활방역 실천 기반을 다진다.
 - 국민과 함께 하는 생활방역 실천 전략 마련을 위해 생활방역 위원회 소통 분과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거리 두기 실천력 확보를 위해 국민 참여형 이벤트 등 집중적인 홍보도 추진한다.
 - 연말·연시 활동 사례별로 세밀하게 방역수칙을 마련하고 국민들이 선명하게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4가지 핵심 생활방역수칙*을 집중적으로 알린다.











- * ¹ 모임·행사 자제, ² 밀폐·밀집·밀접 장소 가지 않기, ² 의심증상 있으면 검사 받기, ²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철저
- 일상생활에서 가족과 지인에게 감염이 전파된 실제 사례도 지속 홍보하여 생활방역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고 자세하게 알린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민행동요령 반짝(스폿) 영상도 제작 하여 KBS 등 10여 개 방송사를 통해 송출할 계획이다.
- □ 연말·연시 모임과 행사는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 직장과 친목 모임이나 행사는 자제하고, 온라인 메시지나 선물 전달 등으로 간소화한다.
 - 축제와 행사도 가급적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대면 축제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사전예약제와 차량 이동형 축제장 관람, 행사 출입 인원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계기 종교행사는 비대면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 비대면 외식 활성화를 위해 외식 할인지원 실적에 배달앱 결제를 포함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 수능 이후에도 철저한 방역 관리를 이어간다.
 - 대학별 평가 집중 관리기간인 12월 1일(화)부터 12월 22일(화) 까지 학사 운영을 비대면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하며, 학원이나 대학가 주변의 음식점 등 수험생 및 학부모 밀집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한다.











- 수능 이후 학생들의 방역 경각심이 느슨해 질 수 있는 점을 고려 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중이용시설 방문이나 각종 이벤트·행사 참여 등 외부활동을 자제하도록 생활지도를 실시한다.
- 또한, 12월 3일(목)부터 12월 31일(목)까지를 학생안전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청소년 출입시설과 학원 등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과 학생 방역관리 계도 활동을 통해 촘촘한 방역관리를 실시한다.
- □ 문화와 여가를 다양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연말·연시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가족·어린이, △공연·영상, △전시·행사 등 국공립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비대면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관계 부처·지자체와 협업하여 콘텐츠 통합 안내를 추진한다.
 - * 문화포털 '집콕 문화생활'(https://www.culture.go.kr/home) 및 과학문화포털 '사이 언스올'(https://www.scienceall.com) 등
 - 스포츠 경기장 현장 전광판 등을 통해 집안에서 관람 중인 실시간 영상을 게시하는 온라인 응원 행사*도 개최한다.
 - * 프로스포츠 구단 개별행사로 진행되며, 농구 등 각 구단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연말·연시 지역 간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여행은 자제하여 주실 것을 권고한다. 주요 관광지에는 방역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여 방역수칙 이행을 지도하는 등 관광지의 방역도 강화한다.
 - 동절기와 연말·연시 방문객 증가에 대비해 스키장 자체 방역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이용 캠페인과 전국 스키장 방역 관리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 이와 함께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을 일반관리시설로 지정하여 방역상황에 따라 체계적인 방역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에	대한 방약	벽 관리도	강화 한다.
--	-------	-------	-------	-------	---------------

- 철도 승차권은 창가 측 좌석을 우선 판매하고, 방역상황에 따라 판매 비율을 제한*한다.
 -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좌석의 50% 이내 예매 제한 권고, 3단계 50% 예매 제한
- **관광, 일회성 운행 목적의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탑승객 명단 관리 및 방역수칙 안내·확인 등 철저한 **방역관리**도 **지속**한다.
- **연안여객선**에 대해서는 해수부와 해경이 참여하는 안전운항 합동 특별점검을 통해 **방역 관리 상황**을 **점검**한다.
-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휴게소 테이블 가림판 설치, 혼잡안내 시스템 운영과 이용객 승·하차 동선 분리로 밀집을 방지 하고 철저한 소독과 환기로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한다.
- □ 연말·연시 다수 이용자 방문이 예상되는 **감염확산 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와 점검도 **강화**한다.
 - **패밀리레스토랑 등 대형음식점**과 지역별 **번화가 소재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방역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이와 함께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과 영화관, 실내 체육시설도 시설 특성에 맞는 방역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 □ 최근 다수 감염사례가 발생한 **사우나시설**과 각별한 이용자 보호가 필요한 **의료기관·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한다.











- 최근 다수의 감염사례가 발생한 **공중위생관리법상 목욕장업소**는 지자체 협업을 통해 합동 방역점검을 실시한다.
-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등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선제검사와 감염관리 교육을 지속해 나간다.
- 사회복지시설은 정부와 지자체, 시설 간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방역관리자 지정을 통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 등 방역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한다.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진정되지 않고 계속 확산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엄중한 위기 상황이라고 강조하였다.
 - 그리고 지금의 확산세를 차단하고 통제하기 위해 시행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은 국민들과 함께 하는 생활방역 실천이 핵심이므로, 4가지 핵심 생활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하였다.
 - 첫째, 당분간 모든 모임과 행사는 자제하고 둘째, 밀폐된 시설과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는 시설, 밀접한 접촉이 일어나는 시설은 이용을 삼가고 셋째, 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검사를 받으며, 마지막으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3 민간부문 일터 방역관리 강화방안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로부터 '민간부문 일터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의 적극적인 방역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홍보 활동, 방역물품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 주요 업종별 협·단체 비대면 간담회를 통해 **사업장의 방역상황 및 현장의 어려움을 지속 점검**하고 있으며, 산단 입주기업을 중심으로 **방역·안전 관련 릴레이 캠페인을 확산**시키고 있다.
 - 또한, 대형마트(체인스토어 협회), 무역센터(무역협회) 등을 통해 코로나 19 방역수칙 영상을 송출할 예정이며, 방역·홍보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기관장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민간이 적극적으로 방역에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산업단지 내 방역도움센터를 통해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을 지원하고, 콜센터 등 산업단지 내에 입주하고 있는 집단시설의 방역도 지원하고 있다.
- □ 고용노동부는 ①방역수칙 개편·지도 및 경제단체 협업 요청, ② 감염 취약사업장 중심 핀셋 현장점검 ③방역 및 일하는 방식 개선 지원을 병행하는 세 가지 전략 추진 중이다.
 - 우선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개편에 따라, '사업장 공통 방역 수칙'과 '콜센터 맞춤 방역수칙'을 개편·안내하였으며, 11월 19일 거리 두기 상향 후에는 안전보건협회·직업건강협회, 안전보건 전문기관 등을 통해 사업장에 대한 방역 지도를 진행 중이다.











- 이와 함께 경영단체에 거리 두기 단계 격상 상향에 따른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재택근무 확대, 송년회 등 회사 회식과 사적 모임 자제를 요청하였다.
- 감염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점검도 강화**하고 있다. 거리 두기 단계에 따른 취약사업장 지도 계획을 시달하는 한편, 12월 11일까지 총 1,500개소에 대해 **회식 취소 및 개인 약속·모임** 자제, 방역수칙 준수 등을 지도할 예정이다.
- 방역물품 지원대상을 콜센터 뿐 아니라 3밀(밀집·밀폐·밀접) 특성이 있는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지난 11월 24일 일하는 문화 혁신 선도기업 140개사를 대상으로 영상시상식을 진행 하는 등 민간의 자발적인 근무 혁신을 유도하고 있다.
-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협·단체를 통한 자발적인 방역 관리 강화와 함께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현장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 연말까지 특별방역강화 기간으로 설정하고, 협·단체별*로 민간 부문 동참 캠페인을 추진하여 방역 강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 * 중기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등
 - 또한, 지방중기청별로 방역 담당관을 지정하여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침 안내와 근무형태 개선을 독려하고,
 지방중기청장 이름의 서한 발송 등 연말연시 방역수칙 준수
 메시지 전파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4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경남)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최근 공동주택 내 사우나 등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주민공동시설을 점검한다.
 - 공동주택 관련 전문가로 점검팀을 구성하고 12월 3일(목)부터 12월 7일(월)까지 3천 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단지 31개소의 사우나, 헬스장, 골프장, 수영장 등 주민공동이용시설 중단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 한편, 최근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 중증치료 TF'를 구성하고,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을 추가로 마련하는 방안을 병원들과 논의하고 있다.
 - **경기도**는 12월 3일(목)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후 생활치료센터 입소, 병원 입원 전까지 **가정에서 대기하는 확진자를 관리**하기 위해 「홈케어시스템」을 시행한다.
 -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이 가정대기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의학적·정신적 상담도 실시할 예정이다.
 - 한편, 종교·문화·체육·관광시설에 대해 수도권 거리 두기 2단계 및 방역 강화조치로 변경된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마스크 착용, 실내체육시설 중 GX류 집합금지 및 관광호텔 주관 행사·파티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 **경상남도**는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13.3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산발적 발생이 계속됨에 따라,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우선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역에 즉각대응팀을 파견하여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을 폐쇄**하고 학교는 **등교를 중지**하였다.
 - 또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과 업종에 따라 거리 두기 단계를 맞춤형으로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3개 시군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창원시의 경우 노래연습장과 목욕장에 대해 집합금지를 추진(12.1.~) 중이다.
 - * 하동군(11.21~12.4), 진주시(11.26~12.9) 창원시(11.29~12.12)
 - 11월 26일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시설별 방역수칙 안내 와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변경된 핵심방역수칙을 안내하는 한편, 출입자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 12월 1일부터는 연말연시 모임·행사 멈추기 캠페인을 통해 ▲ 모든 공적·사적 모임·행사 자제 권고, ▲나와 가족을 위한 "연말연시 가족과 집콕" 추진, ▲연말연시 지켜야 할 3대 방역수칙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다.
 - 환자 치료를 위한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현재 468개 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 중 262개 병상의 여유가 있다. 이와 함께 환자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1월 30일 무증상·경증환자 치료를 위한 경남권 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하였으며, 호흡기전담클리닉의 설치도 지원하고 있다.













5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2월 3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3264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7059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6205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175명 감소하였다.
 -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5개소 2,650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302명이 입소(49.1%)하여 격리 중이다.
 - 어제(12.3.)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적발**하여,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 □ 12월 3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2만3164개소, ▲PC방 2,981개소 등 23개 분야 총 4만4731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94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 붙임 > 1. 동절기 및 연말·연시 방역 수칙
 - 2. 비대면 문화 콘텐츠 무료개방 현황
 - 3. 단계별 방역조치 비교표
 - 4. 지역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현황
 - 5. 감염병 보도준칙
- < 별첨 > 1.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 2.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 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 4.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 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 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1

동절기 및 연말·연시 방역 수칙

● (기본원칙) 연말 모임·행사는 취소하거나 비대면·비접촉으로 전환, 불요불급한 외출 자제 ② (부득이한 외출 시) 실내 상시 마스크 착용, 다른 사람과 거리두기, 손씻기 등 방문 장소 및 동선 별로 생활방역 수칙 철저히 준수

공통

- 실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 *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은 별도 확인
- 필수적인 경우가 아닌 불요불급한 외출 자제, 비대면·비접촉으로 모임·행사 진행
-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
- 타인과 접촉 최소화 및 사람 많은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1. 가정에서 생활 할 때

"집에서 모임없이 안전하게 즐기세요!"

- o 연말·연시 기간은 소규모로 보내기
- o 어르신 등 **고위험군**이 계신 가정은 **외부인의 방문 주의**
- o 손이 많이 닿는 곳(리모컨, 손잡이 등)은 하루에 1번 이상 소독
- o 연말 새해인사는 영상통화 등 **마음으로 함께 하기**

2. 부득이하게 외출할 때

"외출은 가급적 짧게, 혼잡하지 않은 곳으로!"

- o 혼잡하지 않은 시간 선택하여 가급적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 o 밀폐·밀집·밀접 장소는 가지 않기

3. 대중교통 이용하여 이동할 때

"대중교통 이용시엔 마스크, 거리두기는 필수!"

- o 가급적 좌석 예약은 비대면 서비스(사전 온라인 예약, 모바일 체크인 등) 이용 * 좌석 예매 시 가급적 한 좌석 띄워 예매
- o 가급적 휴게소 방문 자제, 방문 시 체류시간 최소화 및 공용 공간에서의 음식 섭취 자제
- o 객실내 대화·통화 자제, 꼭 필요한 통화는 기차 통로 이용하여 작은 목소리로 통화
- o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4. 연말연시 등 모임

"모임은 가급적 취소해요"

- 단체모임은 하지 않고 동거 가족과 시간 보내기 또는 비대면 즐길거리 찾기
- **동거하지 않는 친지, 지인과의 모임**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
- o 불가피하게 대면 모임을 하는 경우에도 **식사는 최대한 자제, 대면 모임 시간 최소화하기** * 방역관리자 지정 및 참가자 명단 확보, 행사당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참가자는 참석 중단 및 방역담당자에게 통보

5. 음식점·카페 등에서 식사할 때 "외식할 경우 거리유지, 대화자제, 손위생 만은 지켜주세요"

- o 식당 카페는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대에 방문 또는 포장·배달 활용
- ㅇ 음식섭취 외 시간에는 상시 마스크 착용
- o 음식을 가지러 가는 등 이동 시, 대기 시 **마스크 상시 착용하고** 일행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2m 이상 거리 유지
- o 지그재그 또는 한 방향으로 착석, 개별 공간에서 개인별 식사
- o 음식은 개별식기에 덜어먹고 식기류, 술잔 등은 개별 사용
- o 식사 시 대화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 및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

6. 귀가 후

"귀가 후 아프면 검<u>사</u>받으세요"

- 귀가 후,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개인방역 철저**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 관찰 및 외출 자제**
- - · 귀가 후 38도 이상 고열 지속, 증상 악화 시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나 보건소 문의













붙임 2 비대면 문화 콘텐츠 무료개방 현황

- □ 문화포털 '집콕 문화생활' 특별 기획페이지 개설
 - 국공립기관 비대면 문화·예술 콘텐츠 통합 무료제공 (12.23~1.3)
 - △가족·어린이, △공연·영상, △전시·행사 등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 콘텐츠, 즐길거리·볼거리를 제공
 - ▲(국립중앙박물관) 신국보보물전·이집트전 등 전시 리뷰 콘텐츠 핀란드전·은해사 괘불 등 전시 UCC. 청소년·성인·외국인 대상 온라인 교육콘텐츠
 - ▲ (국립민속박물관) 상설 및 특별전 관련 전시 영상. 유아 어린이 대상 온라인 교육콘텐츠 등
 -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온라인 특별전('13~'20) 영상. 근현대사 관련 온라인 공연
 - ▲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사 전시투어 생중계 영상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유튜브 M/CA TV 등
 - ▲(**한글박물관**) 기획전시·상설전시 관련 영상, 온라인 한글문화 강좌 등
 -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 시대를 걷다' 등 온라인전시(21건) 및 '조선왕실자료' 등 주제별 디지털 콘텐츠(35건) 제공. '힐링 북콘서트' 영상(376건/유튜브) 등
 - 부처·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력, 폭넓은 콘텐츠 통합 안내 추진 ※ 추석 연휴기간(9.28~10.4) 과기(사이언스올)·국방(홈트레이닝)·환경(자연생태)·방통(방송편성)·산림(숲치유) 등 협력
- □ 온라인 주요 과학문화프로그램 운영
 - ○「2020 온라인 청소년 과학하마당」개최 (11.27-29, 사이언스왘)
 - 2020년 청소년 과학탐구성과 공유·경연 개최 및 과학강연·해외 과학 콘텐츠 체험, 랜선 전시회 등 과학문화콘텐츠 체험 기회 제공
 - ※ (프로그램) ①누리마당(탐구대회), ②도전마당(학습프로그램, 퀴즈쇼), ③상상마당(강연·해외콘텐츠), ④갤러리(랜선전시회) 등
 - 「2020 과학문화 콘텐츠페스타」 운영 (11.16~12.27, 사이언스왘)
 - 과학문화 콘텐츠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및 국민이 직접 올해의 과학 문화 콘텐츠를 선정, '대한민국 과학기술 대전(12월)'에서 성과 공유
 - ※ (아이디어 공모) 공모·접수(11.16~12.4) → 심사(12.2주) → Top 10 국민투표(12.21~27) → 사업화('21년) (콘텐츠 PICK) 영화·방송·공연·웹스토리 등 콘텐츠 투표(11.16~12.16) → Top 5 소개(12.21~27)
 - ○「2020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개최 (12.21~27, 서이언스왘)
 - 대국민 과학기술 R&D 우수성과 소개 및 온라인 라이브 이벤트, 비대면 체험 프로그램, 대중 강연·공연 등 다양한 부대행사 운영
 - ※ (주제) '과학기술로(路) 오늘과 미래를 말하다(假)'
 - ※ (주요내용) ①5대분야 성과전시 ②e-포럼 ③과학문화(강연·공연, 여행·게임·영화·예능) ④청년TLO 채용행사













붙임3

단계별 방역조치 비교표

□ 다중이용시설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중점관리시설	▲(공통) 마스크 착용, 출연	<u>-</u>		
유흥시설 5종 (클럽 헌팅포차등)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4m ²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시설 면적 4m ²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노래, 음식 제공 금지	▲ 춤추기금지, 좌석간 이동 금지 추가▲ 21시 이후 운영 중단추가	▲ <u>집합금지</u> ▲ <u>시설 면적 8㎡당 1명</u> <u>인원 제한 강화</u> ▲ 노래·음식제공 금지	
노래연습장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하고 30분 후 사용	▲ 시설 면적 4m²당 1명 으로 인원 제한 추가 ▲ 음식 섭취 금지 추가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 시설 면적 4m²당 1명 으로 인원 제한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u>음식 섭취 금지 추가</u>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 스탠딩금지, 좌석간 1m 거리두기 추가	
식당·카페	▲ 150㎡ 이상의 시설은 ①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② 좌석 / 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 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 수칙은 1단계와 동일, 50㎡ 이상의 시설로 의무화 대상 확대	▲ (식당) 21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 추가 ▲ (식당) 50㎡ 이상의 시설 테이블 거리두기 ▲ (카페)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일반관리시설				
실내체육시설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u>음식 섭취 금지 추가</u>	▲ <u>21시 이후 운영 중단</u> <u>추가</u>	
결혼식장		▲ 시설 면적 4m ³ 당 1명	▲ <u>100명 미만으로 인원</u>	
장례식장	▲마스크 착용, 출입자	인원 제한 추가	<u>제한</u>	
목욕장업	명단 관리, 환기·소독	▲ <u>시설 면적 4m²당 1명</u> 인원 제한 추가	▲ 시설 면적 8m³당 1명인원 제한 강화▲ 음식 섭취 금지 추가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영화관 공연장		▲ <u>다른 일행 간 띄워</u> <u>앉기 추가</u>	▶ 좌석 한 칸 띄우기 강화 ● 음식 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 <mark>다른 일행 간 띄워</mark> 앉기 추가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좌석 한 칸 띄우기 강화(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 멀티방 등		▲ <u>시설 면적 4㎡당 1명</u> 인원 제한 추가	▲ <u>시설 면적 8m*당 1명</u> <u>인원 제한 강화</u> ▶ <mark>음식 섭취 금지</mark> (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학원· 직업훈련기관		▲ 시설 면적 4m [*] 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추가	▶ 음식 섭취 금지(물론 무알콜 음료는 허용) ▶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 는 두 한 의원 제한 또는 한 한 만의 실시하고 21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독서실· 스터디카페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u>다른 일행 간 띄워</u> <u>앉기 추가</u> ▲ <u>단체룸은 50%로 인원</u> <u>제한</u>	▶ 좌석 한 칸 띄우기 강화(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놀이공원· 워터파크		▲ <u>수용인원의 절반으로 인</u> 원 제한 추가	▲ <u>수용인원의 1/3으로</u> 인원 제한 강화
이·미용업		▲ 시설 면적 4m ² 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u>띄우기 추가</u>	▲ 시설 면적 8m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강화
상점·마트· 백화점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추가 수칙 없음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국공립시설	▲경륜·경마 등 50% 인원 제한	▲ <u>경륜·경마 등 20%</u> <u>인원 제한</u> ▲ <u>이외 시설 50% 인원</u> 제한	▲ <u>경륜·경마·경정·카지노</u> <u>운영 중단</u> ▲ <u>이외 시설 30% 인원</u> 제한 강화	
사회복지시설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 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 시설, 집화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시업장, 종교시설	▲ <u>실외 스포츠경기장</u> <u>추가</u>	▲ <u>실내 전체, 실외 집회·</u> <u>시위장, 스포츠 경기장</u>
모임·행사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 1단계 조치 유지하되 집화축제대규모 콘서트 학술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전시회, 박람회, 국제 회의에는 4m'당 1명 으로 인원이 제한
스포츠 관람	▲ 50% 이내로 관중 입장	▲ <u>30% 이내로 관중</u> 입장	▲ <u>10% 이내로 관중</u> 입장
등교	▲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 밀집도 2/3 준수	▲ <u>밀집도</u> 1/3(고교는 2/3) 원칙, 조정 가능
종교활동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 (숙박행사 금지)	▲ 정규예배·미사·법회· 시일식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 ▲ 모임·식사 금지	▲ 정규예배·미사·법회· 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 ▲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 기관·부서별 적정비율 재택근무 실시 권고 (예: 1/5 수준) ▲ 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 <u>기관·부서별 재택근무</u> ▲ <u>콜센터·유통물류센터</u> <u>환기·소독 의무화</u>	<u>확대 권고(예: 1/3 수준)</u>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붙임4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현황(11.7.~)

(12.3. 기준)

구분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1.5단계 적용	12개 광역	-	4개 (세종, 대전, 충북, 충남)	2개 (전북, 전남)	2개 (대구,경북)	2개 (경남, 울산)	1개 (강원)	1개 (제주)
2단계 적용	5개 광역	3개 (서울, 인천, 경기)	-	1개 (광주)	-	1개 (부산)	-	-
	15개 기초		3개 (제천, 충주, 천안)	5개 (순천,군산, 익산, 전주, 완주이서면)	-	3개 (창원,진주, 하동)	4개 (홍천, 철원, 원주, 춘천)	-

	지역		단계조정내용			
구분	권역	시도	기간/지역		조치 단계	
1		서울	<u>11.24.~12.7.</u>	서울 전지역	2(↑)	
2	수도권	경기	<u>11.24.~12.7.</u>	경기 전지역	2(↑)	
3		인천	<u>11.24.~12.7.</u>	인천 전지역	2(↑)	
4		세종	<u>12.1.~12.14.</u>	세종 전지역	1.5(↑)	
5		대전	<u>12.1.~12.14.</u>	대전 전지역	1.5(↑)	
			<u>12.1.~12.14.</u>	충북 일부지역	1.5(↑)	
6	충청권	충북	11.28.~12.14.	제천시1)	2(↑)	
			12.1.~12.14.	충주시	2(↑)	
7		충남	<u>12.1.~12.14.</u>	충남 일부지역	1.5(↑)	
			12.1.~12.7.	천안시	2(↑)	
8		광주	<u>12.3.~12.6.</u>	광주 전지역	2(↑)	
			11.23.~별도명령시	전북 일부지역	1.5(↑)	
		 _{나긔} 전북	11.28.~별도명령시	군산시	2(↑)	
9	호남권		11.30.~별도명령시	익산시	2(↑)	
	조 다 다		11.30.~별도명령시	전주시	2(↑)	
			<u>12.1.~12.14</u>	완주군(이서면)	2(↑)	
10		. ALE	<u>11.24.~12.7.</u>	전남 일부지역	1.5(↑)	
10			11.20.~별도명령시	순천시	2(↑)	
11	경북권	대구	<u>12.1.~12.14.</u>	대구 전지역	1.5(↑)	
12	3독년	경북	<u>12.1.~12.14.</u>	경북 전지역	1.5(↑)	
13		부산	<u>12.1.~12.14.</u>	부산 전지역	2(↑)	
14		울산	<u>12.1.~12.14.</u>	울산 전지역	1.5(↑)	
	경남권		<u>11.26.~12.9.</u>	경남 일부지역	1.5(↑)	
15	002	경남	11.29.~12.12.	창원시	2(↑)	
13		0 0	11.26.~12.9.	진주시	2(↑)	
			11.21.~12.4.	하동시	2(↑)	
			<u>12.1.~12.14.</u>	강원 일부지역	1.5(↑)	
			12.1.~별도명령시	청원군	2(↑)	
16	16 강원	강원	12.1.~별도명령시	홍천군	2(↑)	
			12.1~12.7.	원주시	2(†)	
			12.3.~12.14.	춘천시	2(↑)	
17	제주	제주	<u>12.1.~12.14.</u>	제주 전지역	1.5(↑)	

¹⁾ 충북 제천시는 12.1~12.3까지 3단계에 준하는 조치 시행













붙임5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 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워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 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 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 ④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 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